

임시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9년 6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2. 장 소 : 켄싱턴 호텔 여의도 상하오
3. 회의소집 통지 내용
 - 통지 일 : 2019년 6월 17일(월)
 - 통지대상 : 이사 8명, 감사 2명
 - 통지방법 : 소집공문 이메일 발송 및 유선 연락
 - 회의목적 : 법인 정관변경(안) 심의의 건, 법인 및 산하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법인 및 산하기관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등
4. 출석인원 : 박성경, 정재철, 이태웅, 윤형주, 정순둘, 배극수, 원치윤 (이사 7명)
이천화 (감사 1명)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정재철 대표이사가 재적이사 8명 중 7명(박성경, 정재철, 이태웅, 윤형주, 정순둘, 배극수, 원치윤), 감사 2명 중 1명(이천화) 참석함을 보고하니, 박성경 이사장이 회의를 개최하다.

6. 전 회의록 통과

정재철 대표이사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다. 이에 이태웅 이사의 동의와 윤형주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을 통과하다.

7. 사업보고

심정영 국장이 2019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해 보고하다.

8. 안건심의

<제 1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정재철 대표이사가 첨부자료와 함께 정관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다.

- 정관변경 사유

이랜드복지재단은 2001년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북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안정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관 변경이 필요함

- 정관 신구 대비표

변경 전(현행)	변경 후(개정안)
<p>제4조 (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회복지 지원 사업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업3. 국내외 빈민지역에 대한 구호사업4.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지원 사업<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법 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 노인요양시설 운영- 노인복지법 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종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운영- 노인복지법 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	<p>제4조 (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회복지 지원 사업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업3. 국내외 빈민지역에 대한 구호사업4.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지원 사업<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법 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 노인요양시설 운영- 노인복지법 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종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운영- 노인복지법 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

<p>주•야간보호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재가노인지원)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복지시설 - 보육시설 <p><u>5. 사회복지 출판·홍보사업</u></p> <p><u>6.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u></p> <p>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주•야간보호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재가노인지원)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복지시설 - 보육시설 <p><u>5. 인도적 차원의 북한지원 사업</u></p> <p><u>6. 사회복지 출판·홍보사업</u></p> <p><u>7.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u></p> <p>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

이천화감사가 정관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다. 정재철 대표이사는 우리재단이 설립이후 북한지원사업을 지속하여 왔는바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정순둘이사는 그동안 법인 정관에 북한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업을 시행함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바 금번 정관변경이 복지재단의 사업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를 추가 질의하다. 심정영국장은 정관개정이 없더라도 북한지원사업은 현재처럼 지속됨을 설명하니 이태웅이사는 본 건 정관변경건은 필요성 등을 자세히 검토 후 추후 재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윤형주이사가 동의하고 원치윤이사가 동의재정하여 박성경 이사장은 본 건 정관변경을 유예하고 필요성을 검토후 추후 재논의하는 것에 대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이사장은 본 건 정관변경안 심의의 건은 유보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의됨을 선포하다.

<제2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정재철 대표이사가 첨부자료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 이랜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추가경정예산(안) (단위:천원)			
기관명	기정(A)	추경(B)	증감(B-A)
이랜드복지재단	8,706,000	11,583,369	2,877,369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3,360,471	3,418,315	57,844
하당노인복지관	3,632,357	3,698,587	66,230
이랜드하당재가센터	114,104	114,075	△29
하당노인복지관 웰빙카페	58,141	54,141	△4,000
진도노인복지관	1,303,904	1,329,421	25,517
서구노인종합복지관	5,307,738	5,554,418	246,680
서구노인복지센터	139,504	160,744	21,240
꽃밭정이노인복지관	2,193,576	2,283,133	89,557
꽃밭정이노인복지센터	270,451	272,911	2,460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1,668,594	1,689,530	20,935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5,398,004	5,527,831	129,827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3,566,500	3,780,050	213,550
강북데이케어센터	605,610	623,030	17,420
강북데이케어센터(특별회계)	6,450	7,950	1,500
봉화군노인복지관	1,525,929	1,538,408	12,479

정재철 대표이사가 이랜드복지재단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예산 조정과 후원금의 증가 및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으로 세입예산이 증가됨을 설명하고, 법인 산하기관은 보조금, 후원금, 전입금 등 예산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절차임을 추가 설명하며 의결을 주문하다.

이에 정순돌 이사의 동의와 원치윤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가결하다.

<제 3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의 운영규정 개정 안건을 상정하다. 이에 정재철 대표이사가 법인과 산하기관의 운영규정 개정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 이랜드복지재단의 운영규정 개정 사유

: 정관변경에 따른 개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07.16.)에 따른 직원윤리규정 제정

- 산하기관 통합운영규정 및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및 강북실버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 개정 사유

(통합운영규정 사용 9개 시설: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진도노인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봉화군노인복지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07.16.) 및 재무회계, 문서관리규정 등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함

- 강동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 개정 사유

: 2019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18.12.26) 및 근로기준법, 재무회계 규정 등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규정 개정 필요

이에 윤형주 이사가 동의와 배극수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운영규정 개정 안건을 가결하다.

<제 4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수탁신청 및 지원계획, 관장 선임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정재철 대표이사가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인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수탁신청 및 지원계획, 관장 선임 건에 대해 설명하다.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재단 산하기관 중 최초 위탁기관으로 1999년 12월 개관 이후 20년간 (수탁 6기) 운영하며, 서울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전문기관으로 이번 수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 7조(관리 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의거하여 공개위탁 형태로 진행됨을 추가 설명하다.

향후 마포노인종합복지관(병설 마포데이케어센터 포함) 수탁운영에 필요한 법인지원금 총 8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법인 지원과 함께 현재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김윤태 관장을 재선임해 주시길 요청하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마포구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수탁 운영을 신청하고자 함을 설명하며 의결을 주문하다.

- 수탁신청 및 지원계획, 관장 선임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수탁기간	위탁주체
서울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68	김윤태	2019.11.8.~2024. 11.7. (5년간)	서울특별시

•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5년간 법인전입금 내역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억원	1.6억원	1.6억원	1.6억원	1.6억원	1.6억원

이에 원치윤 이사의 동의와 이태웅 이사의 재청으로 박성경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 5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설장의 산하기관 무보수 겸직 심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설장의 산학기관 무보수 겸직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다.

정재철 대표이사가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장이 재선임 됨에 따라 시설장의 산하기관 무보수 겸직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이유는 각 시설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병설 마포데이케어센터를 겸직하는 경우, 4대 보험료의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설장의 보수는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만 지급되고, 해당 센터에서는 무보수로 겸직을 해야함으로 이에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설장의 산하기관 무보수 겸직이 필요함을 추가 설명하다.

성명	직위	겸직기관	겸직기관 직위	비고
김윤태	서울시립마포노인복지관장	병설 마포데이케어센터	센터장	

이 안건에 대해 배극수 이사의 동의와 정순돌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설장의 산하기관 무보수 겸직 안건을 가결하다.

<제 6호 의안> 진도노인복지관 셔틀버스 폐차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정재철 대표이사가 진도노인복지관 셔틀버스는 2007년에 구입하여 12년 간 운행하였으나 차량 노후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사고 우려 및 지속적인 수리비가 발생하여 폐차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이 안건에 대해 정순돌 이사의 동의와 원치윤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 7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외부추천이사 선임의 건

박성경이사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정재철 대표이사가 배극수 외부추천이사의 임기가 곧 만료됨을 설명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3배수 추천받은 대상자 중에서 선임해야함을 추가 설명하다. 임기기간동안 사회복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던 배극수 이사를 재추천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본 건에 대해 원치윤 이사와 정순돌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배극수 이사를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기로 가결하다.

9. 폐회선언

다른 안건이 없자 이태웅 이사가 폐회를 동의하고 윤형주 이사가 재청하여 박성경 이사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의 의사진행과 결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출석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폐회시각 12시 30분

2019년 6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박성경 (인)

대표이사 정재철 (인)

이사 이태웅 (인)

이사 윤형주 (인)

이사 정순둘 (인)

이사 배극수 (인)

이사 원치윤 (인)

감사이천희 (인)